

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선	기 관 의 장
람	

제 1373 호 2022. 11. 17.(목)

고 시
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-263호[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, 도시관리계획 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]..... 1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-264호[울산광역시 북구 도로구간(종속구간 설정) 변경 고시]..... 6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-265호[도로명주소 폐지 고시]..... 8

공 고
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-1557호[울산광역시 북구 금고 지정 공고]..... 9

안 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☞ 북구 홈페이지(www.bukgu.ulsan.kr) → 구정소식 → 공고 → 북구공보
--------	---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: 미디어정보담당관(☎241-7125, 행정7125)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 - 263호

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, 도시관리계획 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-249호(2022.10.27)로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476-4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및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로 지형도면 고시한 사항에 대하여 연속지적도 정비에 따라 지형도면 정정 고시합니다.

2022년 11월 17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1. 사업계획 변경승인(변경없음)

가. 사업시행자

- 1) 사업의 명칭: 주택건설사업[공동주택(아파트) 및 부대·복리시설]
- 2) 사업주체
 - 가) 성 명: (주)무궁화신탁 대표자 권준명
 - 나) 주 소: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4, 22층 (역삼동, 포스코피앤에스타워)
- 3) 사업위치: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476-4번지 일원

나. 사업개요

구 분	변경 전	변경 후	비 고
사 업 주 체	네오산업개발(주) 대표이사 이운학	(주)무궁화신탁 대표자 권준명	변 경
사 업 위 치	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476-4번지 일원	-	변경없음
대 지 면 적	18,480.8㎡	18,478.2㎡	변 경
건 축 면 적	4,531.1161㎡	4,567.0461㎡	변 경
연 면 적	68,303.4012㎡	68,287.0634㎡	변 경
건 폐 율	24.52%	24.72%	변 경
용 적 륜	248.13%	248.00%	변 경
동 수(주/부)	주: 5개동, 부속: 14개동	주: 5개동, 부속: 15개동	변 경
세 대 수	352세대	-	변경없음
주 택 형 별	(민간)분양아파트	-	변경없음
사 업 비	193,193,500천원	-	변경없음

2. 사업시행기간(변경없음)

- 2022. 11. 01. ~ 2025. 06. 30.

3.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(변경없음)

○ 주택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·허가 등의 의제사항을 포함합니다. (해당분만 포함)
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의 결정(변경)

4. 승인관련서류: 울산광역시 북구청(건축주택과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□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(변경)

(변경없음-연속지적도 정비에 따른 정정)

I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조서

1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구역명	위 치	면 적 (㎡)			비 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
변경	278	신천6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	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476-4번지 일원	24,026.9	증) 263.6	24,290.5	

■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구역명	변경 내용	변경 사유
278	신천6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	·면적증가 - 24,026.9㎡→24,290.5㎡ (증 263.6㎡)	· 구역밖 서측 현황도로를 구역내 편입함으로써 도시계획도로 정비 및 각종 민원을 해소하고자 함

II.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조서

1. 용도지역·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·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
가. 용도지역 결정(변경)조서

구 분		면 적(㎡)			구 성 비 (%)	비 고
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합 계		24,026.9	증) 263.6	24,290.5	100.0	
주거지역	제2종일반주거지역	24,026.9	증) 263.6	24,290.5	100.0	

2.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
가. 교통시설

(1) 도로

(가) 도로 총괄표

류별	구분	합 계			1류			2류			3류		
		노선수	연장 (m)	면적 (㎡)	노선수	연장 (m)	면적 (㎡)	노선수	연장 (m)	면적 (㎡)	노선수	연장 (m)	면적 (㎡)
합계	기정	1	379	5,559.1	-	-	-	2	303	4,607.1	1	76	952
	변경	1	379	5,812.3	-	-	-	2	303	4,860.3	1	76	952
중로	기정	2	336	5,181.3	-	-	-	1	260	4,229.3	1	76	952
	변경	2	336	5,434.5	-	-	-	1	260	4,482.5	1	76	952
소로		1	43	377.8	-	-	-	1	43	377.8	-	-	-

(나) 도로 결정조서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 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과지	경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 원 (m)									
기정	중로	2	577	15	국지 도로	260	대로 3-40	중로 3-474	일반 도로	-	-	-	
변경	중로	2	577	15~20	국지 도로	260	대로 3-40	중로 3-474	일반 도로	-	-	-	
기정	중로	3	474	11	국지 도로	76	신천동 229-7	신천동 229-2	일반 도로	-	-	-	
기정	소로	2	669	8	국지 도로	43	중로 2-577	소로 3-279	일반 도로	-	-	-	

■ 도로변경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중로2-577	중로2-577	· 일부구간 확폭 (B=15m→15~20m)	· 구역밖 서측 현황도로를 구역내 편입함으로써 도시계획도로 정비 및 각종 민원을 해소하고자 함

3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번호	가구번호	면적(m ²)	획 지			비 고
				획지번호	위 치	면적(m ²)	
기정	합 계		18,480.8	-	-	18,480.8	-
변경			18,478.2	-	-	18,478.2	-
기정	1	1B	18,480.8	1	북구 신천동 477-13번지 일원	18,480.8	공동주택
변경	1	1B	18,478.2	1	북구 신천동 477-13번지 일원	18,478.2	공동주택

■ 변경사유서

도면번호	가구 또는 획지번호	변경내용	변경사유
1	1B-1	가구 및 획지 면적 변경	· 토지분할에 따른 면적 변경

4.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(변경없음)

구분	도면번호	위치	구분	계 획 내 용
신설	1	1B-1	용도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(A)
			건폐율	30%이하
			용적률 (기준/허용)	200%이하 / 250%이하
			높이	75m(24층)이하
			배치	-
			형태	-
			건축선	-

■ 건축물의 용도

구분	지정용도	권장용도	허용용도	불허용도
A	-	-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	-

■ 용적률완화

울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	계획대상지												
<p>▪ 3-3-2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완화되는 인센티브를 적용할 경우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아래와 같다.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40 452 775 622"> <thead> <tr> <th>일반주거지역</th> <th>기준용적률(%)</th> <th>허용용적률(%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제1종</td> <td>150</td> <td>150</td> </tr> <tr> <td>제2종</td> <td>200</td> <td>250</td> </tr> <tr> <td>제3종</td> <td>250</td> <td>3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일반주거지역	기준용적률(%)	허용용적률(%)	제1종	150	150	제2종	200	250	제3종	250	300	<p>1. 무상귀속 : 1,377.2㎡ 2. 신설 공공시설 : 5,812.3㎡ - 도로 : 5,812.3㎡ 3. 완화용적률 = 변경전 용적률 + [1.5×(공공시설부지×공공시설부지 용적률)÷실사용부지] = 200+[1.5×(5,812.3-1,377.2)×200]÷18,478.2 = 272.0% ⇒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허용용적률이 250%이하이므로 최대 허용용적률은 250%이하로 적용</p>
일반주거지역	기준용적률(%)	허용용적률(%)											
제1종	150	150											
제2종	200	250											
제3종	250	300											

■ 건축물의 용도

구분	지정용도	권장용도	허용용도	불허용도
A	-	-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	-

5.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

가. 차량진출입 허용구간에 관한 결정조서

구분	도면번호	위 치	계 획 내 용	비 고
신설	1	1B-1	차량출입허용구간 지정(2개소)	중로 2-577호선변

Ⅲ.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: 게재생략

Ⅳ.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: 게재생략

V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

1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에 대한 지형도면고시도 : 게재생략
2.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 북구청(건축주택과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2 - 264호

울산광역시 복구 도로구간(종속구간 설정) 변경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, 제19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구간(종속구간 설정)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년 11월 17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1. 고 시 일 : 2022. 11. 17.
2. 고시방법 : 관보 및 홈페이지, 게시판
3. 고시내용 : 도로구간(종속구간 설정) 변경에 관한 사항 1건
※ 붙임(조서 및 도면) 참조
4. 변경사유 : 1차 종속구간 신규 설정(주도로 : 달곡2길)
5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구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(☎052-241-7283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도로구간 변경 조서 및 현황도 1부.

도로구간(종속구간 설정) 변경 조서 및 도면

구분	도로명	길이 (m)	폭 (m)	도로 유형	도로구간		관할 행정구역	기초 간격(m)	기초번호		도로명 부여·변경 사유
					시작지점	끝지점					
신규 (종속구간)	달곡2길	50	3	길	무룡동 327-7	무룡동 327-5	북구	20	102-1	102-6	1차 종속구간 신규 설정

도로명주소시스템



항공영상 사진

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2 - 265호

도로명주소 폐지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년 11월 17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폐지

도로명주소	소재지 지번	도로명주소 폐지일	폐지 사유
효암로 323	연암동 903-1	2022. 11. 17.	건축물 멸실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구청 민원지적과(☎052-241-7283)에 문의 또는 복구청 홈페이지(www.bukgu.go.kr)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22. 11. 17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
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 - 1557호

울산광역시 복구 금고 지정 공고

「지방회계법」 제38조 제1항 및 「울산광역시 복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 복구 금고 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1월 17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1. 지정 금융기관 : NH농협은행(울산영업본부)
2. 약정 기간 : 2023. 1. 1. ~ 2025. 12. 31.(3년)
3. 취급 회계 : 일반회계, 특별회계, 기금